##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3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김진표·김병기·안규백

황 희・김병주・강득구

주철현 • 민홍철 • 최종유

김민기 · 김수흥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요소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해당 차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우주개발사업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

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 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 으로써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 호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대통령이"로 하며,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를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및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를 두고,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
- ⑥ 위원회,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 및 국 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우주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③
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	<u>20명</u>
성한다.	
④ 위원장은 <u>과학기술정보통신</u>	④ <u>대통령이</u>
<u>부장관이</u>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그 밖에	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	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
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 국무조정실장,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	5
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u>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원장으로 하는 <u>우주개발진흥실</u>	<u>민간우주개발분과</u>
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	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분과위
위원회를 둔다.	원회를 두고, 국방부장관을 위
	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
	과위원회를 둔다.

6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 및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